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개정된 최저임금법

1.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보전 = 조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월 최저임금은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사안으로, 상당한 진통 끝에 통과된 내용이다. 지난해 7월 노동시간이 44기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 것과 맞물려 최저임금 결정 뒤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으로 결정돼, 주44시간 노동의 경우 월 64만1.840원(226간), 주40시간이면 월 59만3,560원(209시간)으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40시간 도입이 되더라도 월64만1천840원을 보장받을 수 잇게 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최저임금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2. 원·하청 공동책임 부여 = 환노위는 '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원청 등)의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에 담기로 했다.

이 또한 정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내용으로 최근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 논란이 가중되는 속에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이다.

다만 원청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귀책사유는 ▶직상수급인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 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정리했다.

3.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적용시기도 '9월부터 다음해 8월'에서 회계연도에 맞춰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적용대상도 일부 확대됐다. '감액적용'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제외됐던 감시 단속적 노동자와 수습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행령에 담을 사안인 감액률은 법안 취지가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합의키로 했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평소 안면이 있던 甲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금 7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간청하기에 연대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였더니, 이튿날 연대보증인으로 乙을 대동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대보증인 乙의인감증명을 받고 차용증서에는 甲과 乙의 각 자필서명·날인을 받은 후 금 7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乙이 丙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에 나타난 명의인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갔는바 乙과 丙의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되는지요?

A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며, 위 사안에서 丙의 인감증명을 도용한 乙은 형사상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으로 민사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丙의 책임을 살펴보면, 만일 乙이 丙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민법은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 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판례는 소유권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대물변제계약을 한 경우, 근저당설정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위조한 백지어음 등의 서류와 본인의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전차용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서 각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하여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0.11.11. 80다1942, 1959.8.27. 88다카13219, 1959.8.27. 4292민상331).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가 乙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丙에게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丙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만약 乙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되고, 무권대리에 대하여 민법은 "대리권이 없는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30조), 위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 등을 도용당한 丙은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문의: 박문우 변호사 (031-874-1652)

한·방·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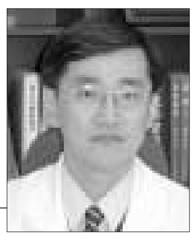

의정부한방병원 한방5과 병원장 **김원찬**

여름철엔 섭생이 가장 중요

옛부터 일년중에서 여름철이 가장 섭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산후 몸조리도 여름철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여름에 출산한 산모가 나중에 산후풍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방에서 더운 기운은 기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갈증이 심해서 빈속에 찬 것을 자주 찾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면 비위가 냉해져서 소화기능이 약해진다. 또한 상한 음식으로 비위의 습열을 조장해 배탈이 나타나기 쉽다. 흔히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이는 뜨거운 것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이야기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해줌으로서 허약해진 비위장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날씨가 더우면 기혈이 체표로 몰림으로서 상대적으로 속은 기혈의 밀도가 엉성해져서 냉한 상태로 된다.

따라서 삼복더위에 삼계탕이나 닭백숙, 개장국 등의 보양식품을 통해서 약해진 양기를 도와주어 기혈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배려한 선조들의 지혜인 것이다.

한방에서는 식중독을 '토사곽란'이라고 한다.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나쁜 기운을 몸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위와 장의 기운이 항진되면서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만일 토사곽란이 있을 때는 가능한 음식섭취를 제한하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미음으로 위를 달래주면서 오이냉국이나 된장국으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한 음식으로 열이 날 경우에는 웬만하면 해열제는 복용하지 말고 충분히 속을 비운 다음 위와 장을 다스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정부한방병원(031-820-7200) www.ujbhanba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가정에서 성교육이 필요한 건 같은데요.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가 갖추어야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A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선 거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절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 성교육을 학교에만 떠맡기려는 분은 안 계시겠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대부분의 성지식을 습득,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하는 성이란 왜곡되고 과장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가정에서 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음란물 같은 매체를 통해 불건전하고 왜곡된 성을 먼저 접하기에 그것을 마치 성의 전부인 듯, 착각과 오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녀의 성교육시 부모의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태도들을 소개합니다.

1.성교육은 반드시 인간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생명존중) 2.자연스러운 태도로 임한다. 3.성화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4.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정해준다. 5.'남녀평등'의 전제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개인의 성장 속도나 성에 대한 지식 정도에 따라 개인차를 고려한다. 7.부모가 올바른 성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8.청소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9.부모가 건강한 성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부모 자신이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1.부모 자신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 12.부부관계는 물론 민주적 가정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13.부모 자신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이성교제 및 청소년기 성관 관련된 행동에 대하여 입장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15.기정세대의 성문화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될 수 잇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 (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 포천의료원 임상병리과 과장 **김동렬**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나요? ②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에 대한 치료로는 크게 약물요법, 물리치료, 운동요법을 들 수 있겠다. 통상적으로 관절염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몸이 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약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진다면 가지고 있던 우려가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물리치료나 운동 용법 또한 약물치료와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적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관절염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천할 만한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이 있다.

운동의 강도는 환자 본인의 질환 상태에 알맞게 조절이 되어야 하며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관절이 많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관절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공관절) 치료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습게 보고 무시할 만한 나약한 친구도 아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 불량한 친구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자와 전문의가 함께 손 잡고 꾸준히 치료를 해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포천의료원 (031-539-9114)

세·무·상·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친구가 운영하는 중견수출업체 주주로 매년 약간(대략 2천만원 정도임)의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번 신고시에는 배당소득을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등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2003년 귀속분까지는 금융소득 금액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당연종합과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이번에 신고하는 2004년 귀속분부터는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예전에 당연히 종합과세되었던 비상장·비등록법인의 배당금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금등도 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기준 금액인 연간 4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당연 종합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한 배당세액공제도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4천만원 x 15%)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기본세율.

2.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x 기본세율.

2004년도에 귀하가 수령한 배당금이 4천만원 이하이고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송 관 수 (02-404-9944)

Tip

식물관리요령

▶ 물주기

표면의 분토가 마르는 것을 기준으로 흠뻑준다

▶ 습도

열대·이열대 지방이 원산지이므로 고온다습 70~80%

▶ 광선

실내의 경우 광선이 많이 들어 오는 곳에 관리

▶ 온도

15℃에서 30℃내외의 생육이 활발

▶ 비료

봄·가을 생육기에 희석액 월 2~3회를 준다